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0. 10. 17.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5월 12일

·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다. 상정 일자

○ 제174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6. 19) 상정, 질의답변, 유보

○ 제179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9. 25) 상정, 질의답변, 유보

○ 제180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10. 17)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가. 제안 이유

- 민법 제32조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조례 제2442조 '99. 2. 26 제정)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6022호 '99. 9. 7 제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나. 주요 골자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혜영)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는 민법 제32조와 함께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의 설치근거가 되는 자치 법규였으나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전환하여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9. 9. 7 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제180회 제2차 부록 제1호 제1차 회기 제1차 회의안 제1호)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조례 제2442호 1999.2.2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제6022호 99. 9. 7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은 기본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9조(설립) ①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②재단은 시·도별로 2이상을 들 수 없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단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은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를 재단의 명의로 본다